보건소 구내식당 안심좌석 확인대장

※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, 제76조의2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감염전파의 차단을 위해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15조 및 제17조,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.

[확인대장은 방문일 기준 4주 이후 파쇄 처리]

발열·호흡기 증상이 있거나,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직원은 **출입 제한**됩니다

연번	날짜	시간	부서	성명	비고